KOSHA GUIDE X - 41 - 2011

단독작업 리스크의 통제에 관한 일반지침

2011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사단법인 한국안전학회 리스크관리 연구위원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박달재
- 제·개정 경과
- 2011년 11월 리스크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HSE, "Working alone: Health and safety guidance on the risks of lone working", 2009 Ed., 2009
- KOSHA CODE H-12-2005, 유기화합물 취급 관리지침
- KOSHA CODE B-02-1999, 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
- KOSHA CODE C-07-2004,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
- KOSHA CODE E-02-2001,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 등에 관한 기술지침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1년 12월 26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단독작업 리스크의 통제에 관한 일반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단독작업자를 고용하거나 단독 자영업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단독작업 시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통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단독작업자를 고용하거나 단독 자영업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단독작업자"라 함은 직접적인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된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사람, 즉 건물이 딸린 부지(지역)구내에서 혼자 일하는 사람 (가게, 주유소, 간이매점 등), 자택근무자, 사람들과 떨어져 단독으로 일하는 사람 (공장, 창고, 연구 및 교육 기관, 레저 센터, 박람회장 등), 정상적인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일하는 사람(청소부, 경비원, 수리공 등) 및 이동작업자 등을 말한다.
- (나) "이동작업자"라 함은 건설, 플랜트 설치, 유지보수 및 청소, 전기시설 수리, 엘리베이터 수리, 도장 및 장식업 또는 차량 복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, 농업 및 임업노동자, 서비스직 종사 근로자(우편집배원, 사회복지사, 가정도우미, 의사, 방문간호사, 운전기사, 기술자, 건축가, 부동산 중개인, 외판원) 등을 말한다.
- (2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 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안전보건기술지침 "리스크 관리의 용어 정의에 관한 지침"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일반원칙

- (1) 사업주는 단독작업자의 작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, 그 책임을 단독작업자에게 전가시키지 않아야 한다.
- (2) 사업주는 단독작업자 및 단독작업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정인에게 관련된 대해서도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, 리스크 평가의 산출물에 따라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- (3) 사업주는 단독작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평가하고,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가) 필요한 리스크 평가를 할 때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켰는가?
- (나) 교육, 감독, 개인용 보호구 지급 등의 통제수단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는가?
- (다) 매년 또는 작업활동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 리스크 평가의 산출물을 검토하였는가?
- (라) 리스크 평가를 통해 단독작업자의 작업이 불안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도움이나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여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였는가?
- (마) 단독작업자가 다른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주는 단독작업자 및 원 사업주에게 리스크와 필요한 통제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?
- (4) 사업주는 리스크 평가를 통해 적절한 감시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.
- (5)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리스크가 매우 큰 작업인 경우에 작업자가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가)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감시인이 없는 동안은 작업자가 밀폐공간(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참조) 내에 들어가서 혼자서 작업하지 않도록

X - 41 - 2011

하여야 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기술지침 "유기화합물 취급 관리지침"을 참조한다.

- (나) 잠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잠수사가 혼자서 수중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기술지침 "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"을 참조한다.
- (다) 건설공사 현장의 인력굴착 작업은 가급적 단독작업을 피하고, 최소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하도록 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기술지침 "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"을 참조한다.
- (라) 활선작업 시 주상에서의 방호작업은 원칙적으로 2명으로 하고, 단독작업은 금지하여야 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기술지침 "정전작업 및 활선작업 등에 관한 기술지침"을 참조한다.

5. 리스크 통제를 위한 고려사항

- (1) 단독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작업환경 설정은 일반적인 작업환경 설정과 구분 하여야 한다.
- (2) 사업주는 단독작업자의 작업활동에 적용되는 법규를 인지하고,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.
- 5.2. 단독작업자에 대한 리스크 통제 가능 여부
 - (1) 단독작업자가 보다 많은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(2) 정상작업과 예측 가능한 비상사태(예로, 화재, 장비 고장, 질병 및 사고 등)를 모두 고려하여 예방조치를 세워야 한다.
 - (3) 사업주는 단독작업자의 작업환경을 점검하고,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 - (가) 단독작업자가 작업하는 구역에 특정 리스크의 존재 여부

X - 41 - 2011

- (나) 단독작업자를 위한 안전통로의 존재 여부
- (다) 단독작업자가 접근장비(이동사다리, 발판 등)를 안전하게 취급가능한지 여부
- (라) 작업장 내에 있는 기계장치와 화물이 단독작업자에 의해 안전하게 취급가능한지 여부
- (마) 단독작업자에게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는 특정 화학물질이나 위험물질의 노출 여 부
- (바) 단독작업자가 들기 힘든 과중한 물체를 들어 올리는 작업의 존재 여부
- (사) 장비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제어장치를 작동하는데 1인 이상의 작업자가 필요 하지 여부
- (아) 폭력 리스크 존재 여부
- (자) 경험이 적은 작업자 임산부 또는 장애를 가진 작업자가 단독으로 일할 때 특별한 리스크의 존재 여부
- (차)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비상상황에서 명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 록 적절한 조치가 있는지 여부
- 5.3. 질환이 있는 작업자의 단독작업 가능 여부
 - (1) 질환이 있는 작업자가 단독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다.
 - (2) 사업주는 단독작업자에게 육체적 및 정신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과 예측 가능한 비상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.

5.4. 교육 및 훈련

(1) 사업주는 작업자가 수행할 단독작업에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

X - 41 - 2011

하며, 작업시작 전 단독작업과 관련된 리스크와 예방대책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.

- (2) 사업주는 단독작업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(또는 수행할 수 없는) 작업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.
- (3) 사업주는 단독작업자가 경험하지 못한 작업이나 교육·훈련을 받지 못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
5.5. 감시

- (1) 사업주는 단독작업자가 지속적인 감시의 대상이 아닐지라도 단독작업자가 작업과 관련된 리스크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방대책을 이행하는 지를 정기적인 감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.
- (2) 단독작업의 특성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때 제기된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주기적인 현장 방문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.
- (3) 요구되는 감시의 수준은 안전보건 상의 리스크를 확인하고, 처리하는 단독작업자의 능력과 리스크 평가의 산출물에 따른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진다. 즉, 리스크가 크면 높은 감시수준이 요구된다.
- (4) 단독작업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적절한 감시가 필요하며, 감시 절차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.
- (가) 단독작업자를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감시하는 자의 성명
- (나) 단독작업자와 감시자 사이의 정기적인 연락여부(휴대폰, 전화기, 무전기 또는 전자 우편 등을 이용)
- (다) 단독작업자로부터 정기적인 특정신호를 받지 못했을 때 작동하는 자동경보장치의 이상 유무
- (라) 비상 시 경보를 울리도록 설계된 기타 장치들의 이상 유무

X - 41 - 2011

(마) 작업완료 후 단독작업자가 원위치로 복귀했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 여부

5.6. 비상조치

- (1) 단독작업자가 작업 중 아프거나 사고 등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비상조치절차를 수립하여 사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.
- (2) 단독작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에는 상호연락 가능한 신호기구(무전기) 등을 휴대하고 유사시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, 특히 위험한 장소에는 CCTV 등을 설치하는 등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장 내 비상조치절차와 위험구역에 대한 정보를 단독작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(4) 단독작업자에게 단독작업 장소 인근 응급치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, 이동작업자는 경미한 부상을 대비하여 적절한 구급상자를 휴대하여야 한다.